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1-70관련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9. .

발 의 자 : 신중갑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제16조제2항 위탁계약기간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16조제2항 중 “5년 이내”를 “5년으”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5년 이내”를 “5년으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6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 ② 위탁계약기간은 <u>3년 이내</u> 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	제16조(위탁계약) ① (생략) ② ----- <u>5년 이내</u> ----- -----.	제16조(위탁계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5년</u> ----- -----.